

성범죄자의 위험유형 별 처우 방안 연구*

이수정⁺ 전주희
경기대학교

최근 국내의 성범죄 양상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의 특성을 분석해보자면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적 처벌을 집행할 때에는 이와 같은 성범죄자의 하위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이와 같은 특성들을 제대로 고려하고 있지 못하다. 본 논문에서는 따라서 성범죄자에 대한 법률적 분류와 심리특성적 분류, 정신의학적 성적 일탈에 의한 분류 등을 통해 성범죄자의 하위유형을 구분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하위유형에 대한 파악은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다양한 처우의 집행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구금제도와 보호관찰 등을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우의 형태로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존의 형사처분이 지나치게 경미하다 하여 최근에는 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되었고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논의되고 있다. 만일 이와 같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의 내용이 다양해진다면 앞으로는 성범죄자들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처우의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며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수혜자의 특성을 고려한 법적 처분의 역동적 체계 구축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주요어 : 성범죄자 유형, 교위협군, 저위협군, 처우 방안

성범죄는 현대사회에도 여전히 발생하는 복잡한 범죄이다. 최근 국내의 성범죄 양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형태와 일회에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연쇄성범죄 등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연쇄살인에서는 성적 일탈의 증거가 자주 관찰되고 있어 성범죄의 양상이 날로 흉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는 잇단 성범죄는 사회를 경악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성범죄 혐의로 집행유예

를 받고 교단에서 물러난 뒤 6년 만에 다시 초등교사로 임용되어 1년 간 여자 아이들을 성추행 해오다가 덜미가 잡힌 사건, 초등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며 3년간 남자아이들을 성추행 해오다가 발각된 사건, 여자아이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영장이 기각되어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성추행 혐의로 붙잡히는 사건 등 연일 성범죄에 대한 보도¹⁾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그 대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위의 사건들은 최근 들어 서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 이 연구는 2006년도 경기대학교 교내연구과제 지원금으로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이수정, (442-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 94-6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전화 : 031) 249-9198, E-mail : suejung@hanmail.net

1) SBS 뉴스(2006. 6. 19)와 YTN 뉴스(2006. 6. 19)에서 인용함.

것이다. 하나 보도되지 않거나 검거되지 않은 암수 범죄까지를 추정해 본다면 훨씬 많은 수의 성범죄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전자감시제도의 집행 이외에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성범죄자를 치료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 이는 재범율이 높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라 생각된다. 하지만 성범죄자들은 그 특성이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모든 성범죄자들에 대해 동일한 처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야기하여 재범을 감소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Looman, Abracen, Serin & Marquis, 2005). 분명 각각의 범죄적 특성에 맞는 처우가 실시되어야 재범율의 감소와 치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성범죄의 하위유형은 어떤 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개별 성범죄자의 특성에 맞추어 처우를 집행하는 것이 가능할는지 탐색하여보고자 한다.

서론

성범죄는 현재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성폭력특별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성범죄자를 처벌하고 있다. 성범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며 이를 침해한 강간, 강제 추행, 강간으로 인한 살인과 상해, 간음 등을 행위 태양으로 하며 그 대상에 있어서는 부녀, 추행에 대해서는 남성도 포함, 장애인, 미성년자, 13세 미만의 아동, 피구금 부녀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4년에 시행된 성폭력특별법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회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들도 신설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률 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궁극적 목적, 즉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는 아직까지 달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성범죄자의 인권과 엄격한 사법절차에 너무 얽매어 성범죄자의 재범을 엄단하지 못하고 보고만 있는 형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하여 재범율이 높

표 1. 성범죄 동종재범자 및 1년 이내 재범율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누계
전체 강간범죄자 수	3,770	3,650	5,488	5,856	4,815	4,554	28,133
동종재범자 수	459	469	778	730	527	671	3,634
1년 이내 재범자 수	203	176	303	255	177	234	1,348
1년 이내 재범율	44.2	37.5	38.9	34.9	33.6	34.8	37.32

자료 : 법무부 보호국(2006)

다고 알려져 있다. 경찰백서(경찰청, 2004)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강간범죄의 재범율은 약 67.5%이며 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신상공개제도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7,208명 중 동일한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가 83.4%에 이른다고 보고 된 바 있다(여의도 연구소, 2005). 또한 법무부 보호국 회의 자료(2006)에 의하면 성범죄자의 1년 이내의 재범율은 2000년 44.2%, 2001년 37.5%, 2002년 38.9%, 2003년 34.9%, 2004년 33.6%, 2005년 34.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범죄에 관한 최근의 언론보도와 성범죄 발생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자료들을 종합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범죄의 실태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되며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구금제도를 우선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거나 가석방, 가퇴원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의 일환으로 수강명령, 사회봉사 명령 등을 집행하고 있다. 구금이나 보호관찰 등 이외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써 신상공개제도를 적용하고, 정신병리적 문제가 있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치료감호소에 치료를 위탁한다. 하지만 이 같은 처분에도 불구하고 현재 성범죄의 심각성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기에 현재 성범죄자들에 대한 전자감시 제도나 성관련 장애를 가진 성범죄자들에 대한 치료감호까지를 적용하고자 하고 있다. 기존의 형사처벌 이외에 이와 같은 다양한 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는 성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처우가 적절하게 실시되어야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라는 법리적 목적이 달성될 수 있으리

라 판단된다. 따라서 성범죄자에 대한 각각의 처분이 어떤 특성을 지니는지 살펴보고 성범죄자의 하위유형별로 기존의 형사처벌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을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성범죄자에 대한 법적 처분의 유형과 특성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처우들이 시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범죄자에 대한 처우를 광의의 형태로 나누어 보았을 때 크게는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시설 내 처우에는 구금제도와 치료감호제도가 해당되며 사회 내 처우로는 보호관찰 혹은 협의의 보호관찰인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이 있다. 그리고는 형벌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써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 등이 있다. 이 외에도 현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어 2008년도 시행이 예정된 재범위험성²⁾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와 치료감호법을 개정하여 형사처분의 집행 후에 일종의 보호감호 형태로 성범죄자들에게 집행하게 될 성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등이 논의 중에 있다. 성욕감퇴제 등의 약물명령의 경우 국내에서는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를 정기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등도 국내에서는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 절에서는 이들 각각의 법적 처분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구금제도 : 시설내처우

형사처분으로써의 구금제도는 현재 형사처벌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써 대다수 우리나라의 성범죄자들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성범죄자는 전체 수감자 32,969명중 4,041명으로 12.2%라고 한다(법무부 보호국, 2006). 현재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별다른 성범죄 치료프로그램이 집행되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교정시설 내에서는 교화프로그램의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에 교정시설 내에서는 주로 전통적인 구금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치료감호제도

형법 제 10조에 의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 형벌을 과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에 대해 형벌을 감경해야 할 때에는 치료감호를 적용한다(형법 제 10조 1항). 또한 알콜, 마약 등 향정신성약물을 남용하거나 이에 중독된 자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어 치료를 받게 된다(형법 제 10조 2항). 따라서 구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성범죄자들 중 정신장애나 약물중독이 있는 경우 주로 치료감호를 적용 받는다.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치료감호소에 감정 의뢰된 175명 중 61.71%인 108명이 책임능력이 저하되어 있거나 상실된 것으로 감정되었으나 이 중 치료감호선고를 받은 성범죄자는 35.7%인 38명에 불과하다(법무부 보고서, 2007). 이처럼 성범죄자들에 대하여서는 일부 정신장애 소견이 제시되어도 해당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여 형사책임의 감경 부분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치료감호를 처분 받더라도 형기의 일부만을 치료목적으로 감호소에서 소요시키고 잔형 기간 동안은 교도소로 송치된다. 따라서 치료감호소 입소인원 중 성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5% 내외이며 현재 이들 치료감호 대상자들은

표 2. 죄명 별 구금 현황(2005)

계	절도	폭행 및 상해	사기 및 횡령	강도	살인	성폭력	기타
32,969	5,497	3,589	3,306	4,784	3,838	4,041	7,914

자료 : 법무부 교정국 홈페이지³⁾

2) 본 논문에서는 위험성과 재범위험성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3) 법무부 교정국 통계자료 중 수형자 죄명별 현황을 재구성 함.

표 3. 최근 5년간 성범죄자 치료감호소 수용 현황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치료감호 입소인원	291	299	308	283	268	1,449
성범죄자 인원	11	10	15	27	16	79
비율(%)	3.78	3.44	4.87	9.54	5.97	5.45

자료 : 법무부 보호국 회의자료(2006)

일반 성범죄자들보다 평균 형기가 반 이상 짧다.

보호관찰제도 : 사회내처우

사회 내 처우로써 보호관찰은 유죄가 확정된 범죄인 혹은 소년범을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수용하여 교정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조건으로 자유롭게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국가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 및 원호를 통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보호관찰은 현재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와 함께 부여되는 보호관찰과 가석방 혹은 가퇴원과 함께 부여되는 보호관찰의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 현재 보호관찰 사건으로 접수된 사건 중 성범죄 사건은 아래의 표로 추정해 볼 수 있다(표 4). 2001년 이후 매년 2000명 가량의 성범죄자가 사회 내 처우를 받고 있고 특히, 2004년 이후에는 3,000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사회 내 처우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성범죄자가 4,041명인 것을 감안하고 보면 절대 적은 수라고 보기는 힘들며 그중 일부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을 저지른다는 보고는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현재와 같은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를 의심하게 한다. 특히 성매매사범에 대해서는 2005년 8월부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자에 한해 교육4)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기관과 전문가, 예산 등이 부족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하는 적정 인원이 부족하거나 과다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아기호증 등을 의심하게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자들을 치료 등의 부가적인 명령 없이 단순히 보호처분만을 내리는 추세는 현재 시민 사회의 격렬한 비판을 받아 전자감시제도 등을 함께 부과

4) 일명 'John School'이라고도 하는데 성매매를 저지른 초범의 남성에게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성교육과정을 이수케 하는 보호관찰제도의 일종임.

표 4. 강력범죄의 보호관찰 접수사건의 연도별 추이⁵⁾

	2001	2002	2003	2004	2005
폭력	9,477	9,983	10,299	9,813	8,312
절도	4,118	4,279	4,754	5,338	4,522
강도	2,015	1,327	1,305	2,309	2,375
성폭력	1,456	1,600	1,413	1,591	1,654
청소년성보호법	413	561	451	1,506	4,759

자료 : 법무부 보호관찰통계연보(2006)

할 것을 고려중에 있다.

신상공개제도

마지막으로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상공개제도는 형사처분은 아니지만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써 사회적 처벌을 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의 재범예방과 재범억제의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는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강간, 강제추행 등), 청소년 대상 성매수범, 청소년 대상 성매수 알선자(성매매 업주 등), 아동 포르노 제작/수입/수출자, 아동과 청소년 인신매매범 등이다. 최근까지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결정해왔다.

지난 7월 2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등록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었다. 본래 청소년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였던 것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확대하였다. 단, 성매수범은 재범자일 경우와 성매수 대상 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거의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공개를 확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정보6)가 등록되며 등록기간은 기존 5년 이었던 것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두 번째, 성범죄자에

5) 2004년부터 죄명별 분류를 10개로 축소하여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범의 인원 내에 풍속사범이 포함되어 있음.

6) 성명, 나이, 주소,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경력 등.

표 5.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대상과 열람권자

현 행		개 정 안
열람 대상자	강간, 강제추행으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① 13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
		② 열람명령 받은 자가 다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때
		③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다시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다시 청소년대상성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심신상 실자로서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열람권자	피해자 및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등록대상자의 시·군·구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시·군·구내의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의 장

대한 취업제한기간도 확대되었다. 형 확정 후 5년이었던 것이 10년으로 확대되며 취업제한기간도 유치원, 학교, 학원 및 교습소,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에서 청소년지원 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공동주택관리 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 청소년대상 체류시설 등으로 확대되었다. 세 번째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의 개시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친고죄가 폐지되고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되었다. 네 번째는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대상과 열람권자를 확대하였으며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처럼 신상공개는 행정처분의 형태이지만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범위, 등록기간, 열람권자, 열람 대상자, 취업 기회와 기관의 제한 등을 확대·강화하여 실시함으로써 재범의 억제와 범죄 예방의 목적을 강력히 달성코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상공개는 해당 범죄자에게는 재범예방의 효력을 발휘하고 잠재적인 범죄자들에게는 일반재지효과 즉, 범죄 억제의 효과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그 효과성을 연구한 결과로 외국의 경우에는 54개월의 추적 연구에서 오히려 신상공개집단의 재범율은 22%였고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집단의 재범율은 19%였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상공개로 인해서 성범죄자들의 재범이 억제된다는 사실의 확인에는 주의할 기해야 할 것이다(신준섭, 이영분, 2004). 하지만 일반재지효과는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와 국정홍보처(2001)가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법으로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찬반의견 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7.3%가 이 제도를 알고 있고 찬성한다고 응답하여, 일반인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에는 일조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신준섭, 이영분, 2004).

전자감시제도

2008년도부터는 국내의 경우에도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전자감시제도를 실시하려고 한다. 이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하여 이들의 재범을 예방하기 어렵고 또한 단순한 보호관찰만으로는 이들을 감독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특히 재범이 의심되는 성범죄자들(표 6)에 대하여 전자감시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가 가석방되는 경우 그리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치료감호의 가중료가 결정되는 경우 보호관찰 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전자팔찌를 부착하게 된다. 외국의 경우(표 5) 대체 형벌로서 전자감시제도를 적용하기도 하며 일정 기간 구금 이후 추후 관리를 위해 전자감시를 시행하기도 한다.

표 6. 외국의 성폭력 범죄자 전자위치추적 부착 사례

국 가	내 용
미 국	1997년 플로리다주에서 가석방 대상자를 상대로 최초 시행. 특히, 플로리다, 콜로라도, 미주리, 캘리포니아주 등은 특정 성폭력사범에 대해 징역형 만기 복역 후 평생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영 국	2003년 시행. ‘형사사법법’에 의거하여 가석방의 조건 혹은 형기만료 후 최장 8년간 출입금지 명령 혹은 외출 제한 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프랑스	2005년 시행. ‘형사범죄 재범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징역형 7년 이상을 선고받은 특정 성폭력사범이 가석방 또는 형기만료 후 출소 시 최대 6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호 주	2005년 시행. ‘성범죄자 감독법’에 의거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특정 성폭력사범을 상대로 최대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자료 : 법무부 홈페이지

표 7. 전자위치추적장치 부착 대상 성범죄자

내 용
성범죄로 2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사람이 형집행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5년 이내에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전자팔찌 부착
이전에 전자팔찌를 찬 적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를 수차례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된 사람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게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형 집행 중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 가중료로 풀려난 성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을 경우

자료 : 법무부 홈페이지

표 6에는 현재 법무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전자감시 대상자군이 제시되어 있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담 치료감호제도

현재의 치료감호법은 심신장애자와 마약류, 알콜 중독자 등 정신장애자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대체주의의 형태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현재 재범가능성이 농후한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치료감호를 적용할 것을 논의 중에 있다.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치료감호법에는 3항을 신설하여 “소아성기호중 등과 같은 성적 성벽 내지 성적 정신장애로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치료의 필요성이 있을 때” 치료감호를 적용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정신장애 성범죄자와 성적 싸이코패스들에 대해 형기 만료 전 감정을 통

해 부정기간 수용, 치료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형태를 민간 위탁(Civil Commitment)⁷⁾이라고 하여 고위험군의 성범죄자들에게 강제로 집행하고 있는데 이는 성범죄자의 치료를 통한 재범예방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동안 치료의 목적이란 하나 형기를 마친 후 다시 감금한다는 이중형벌이라는 논란(Kendall & Cheung, 2004)이 있기도 했지만 1997년 미국 대법원은 Kansas vs. Hendricks의 케이스⁸⁾를 통해 성폭력 흉악범 법률이

7) 성범죄를 저지르고 석방된 사람들이 다시 민간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그들의 위험성에 대한 평가와 치료를 고려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 수감하는 제도

8) Hendricks는 1956년부터 소녀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했으며 1960년 두 소년을 성추행하고 1963년 7세 소년의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주립병원에 수감되었다. 그러나 석방 후인 1967년 8세와 11세의 남매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성폭력 흉악범의 민간위탁 치료프로그램의 시행을 지지하기도 하였다(Pfaffenroth, 2003).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민간 위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가 가동된다면 성범죄자의 인권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의 인권에 너무 얽매어 막장 사회의 안전과 불특정 다수의 시민 혹은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기울여 온 느낌이다. 서두에 언급한 성범죄 사건에서도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영장을 기각하여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 강력하고 강제적인 치료 명령을 부과하고 정기적인 정신감정과 평가를 통해 석방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약물치료명령

외국의 경우 이외에도 성범죄자들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을 집행하는 것이 재범예방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고한다.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인간의 생리적 욕구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생물학적 메카니즘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치료가 효과를 볼 수 있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MPA(Medroxy Progesterone Acetate)처분이 바로 이와 같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약물치료처분이다. MPA처분은 프로게스테론계의 약물이나 세로토닌계의 약물을 보조관찰과 함께 집행하는 것이다. 프로게스테론계의 약물이나 세로토닌계의 약물은 현재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몇 가지 부작용으로 인하여 남성들이 이 약물들을 먹는 것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체중 증가, 피로감, 두통, 우울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inick & LaFond, 2003). 그러나 재범을 억제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인데, 약물치료와 함께 심리치료를 받은 집단의 재범율은 심리치료만 받은 집단의 재범율의

18%밖에 안 되었다고 보고되고 있고 비정상적인 성적 환상 또한 현저하게 줄었다고 보고되고 있다(Winick & LaFond, 2003). 따라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약물치료명령 관련 법안을 보면 캘리포니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제한 없이 모두 치료를 집행하고 있으며 몬타나는 교도소에서 주로 치료를 집행하고 치료비용은 교정국이 담당한다. 또한 치료기간 중에 치료를 거부하면 가석방 없이 10년 이상 구금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에게는 치료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있다. 플로리다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성추행, 유사강간 등을 모두 포함한 성범죄자들을 전부 치료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사전에 치료기간을 명시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치료는 법원이 치료전문가 집단을 선정하고 이들 전문가 집단이 교도소를 방문하여 치료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판결 60일 전부터 MPA치료가 적합한지 사전 선별하고 MPA치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지면 모두 구금시키고 있다. 환자가 약물치료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면 치료자의 권한으로 치료의 중단이 가능하고 성범죄자는 비용의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평생 동안 MPA치료 명령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치료명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전평가 절차와 성범죄자와 부합하는 치료방법 및 치료기간의 설정, 심리치료와 약물치료의 병행, 성범죄자의 동의 여부와 치료에의 의지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약물치료 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인데 아마도 치료감호처분을 받는 성범죄자 즉, 성범죄자 정신감정센터에 입소하게 되는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하게 되면 그 효과성이 더욱 뚜렷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정기적인 거짓말탐지검사와 PPG(Penile Plethysmography)검사

많은 외국의 연구들(Abrams & Ogard, 1986; Ahlmeyer, Heil, Mckee, & English, 2000; Wilcox & Sosnowski, 2005)은 성범죄자들의 죄질개선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거짓말탐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성폭력치료를 위해 음 거짓말탐지검사의 사용을 허용한 국가

다시 구속되어 5년형을 받았고 만기 출소 후 인 1984년 다시 두 명의 13세 소년을 성폭행 하려다 다시 구속되어 성폭력 흉악범으로 분류되었고 법원은 그가 죽을 때까지 감금하는 것만이 다시는 아동성폭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 판결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현재 미국의 17개 주에서 성폭력 흉악범에 대한 민간위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는 영국이다. 거짓말탐지검사의 최대 의의는 치료자들이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는 범죄관련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성범죄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검사는 성범죄의 전력 폭로(SHDT : Sexual History Disclosure Test)검사에 활용되면서 사용이 일반화되었다(Wilcox, Sosnowski, & Middleton, 2000). SHDT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에 대하여 소아기호적 취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는데, 그림 1은 거짓말탐지검사가 심리검사들보다 성도착적 흥미를 밝힘에 있어 더 효과적임을 확인시켜준다. 그림 2는 범죄 시작 연령에 대한 성범죄자들의 보고를 나타내는데, 이 역시 거짓말탐지검사를 받게 되면 성범죄의 초범 연령을 기만하기 더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하여 준다.

텍사스에서는 거짓말탐지검사가 성범죄자 감독의 유용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Wilcox et al., 2000). 특히 성

범죄자들의 피해자를 유인하는 행동, 충동적인 자위행위, 음란장소에의 출입 등을 검사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알아낸 범죄관련 행동은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범죄에 영향을 주는 역동적 요인들이며 이와 같은 검사는 이들 재범 유발 요인들을 통제함에 효과적이다.

텍사스 주에서는 또한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PPG(penile plethysmography), 음경측정기의 활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The State of Texas, 2006). 성범죄 흉악범법(참조, 이수정, 2006)에 저촉되는 대상으로 하여서는 의무적으로 음경측정기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외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그들의 성적 일탈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경측정기를 사용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때 성범죄자들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는 텍사스주가 인정한 전문가인 정신의학자, 심리학자, 그 이외 치료자들이 담당한다.

성범죄자의 위험성 분류

성범죄자의 유형

성범죄는 그 행위 태양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형법적인 분류로는 강간, 강제추행, 강간에 의한 상해·치상, 강간에 의한 살인·치사, 미성년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간음, 혼인 빙자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이 있을 수 있고 앞서 언급했던 성폭력특별법에 의한 분류로 추가된 것은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강간, 13세 미만의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의제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욕만족목적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영리목적 촬영물 유포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는 모두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한 성범죄의 유형이며 법률상의 성범죄 유형으로만 성범죄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분명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법률은 범죄를 구성할 때 목적, 의도, 행위 태양 등을 중심으로 위험성과 형량을 고려하고 위법성을 조각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책임성을 조각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성범죄를 분류하는 방법으로 법률에 의한 분류 이외에도 연령에 의한 분류, 심리학적 원인에 의한 분류나 성적 일탈에 의한 분류 등이 있을 수 있다(이수정, 2006).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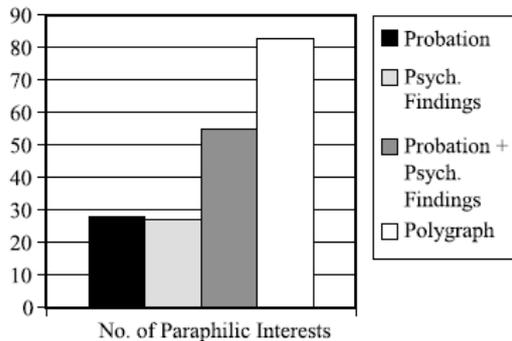


그림 1 거짓말탐지검사 시 성도착적 사고의 보고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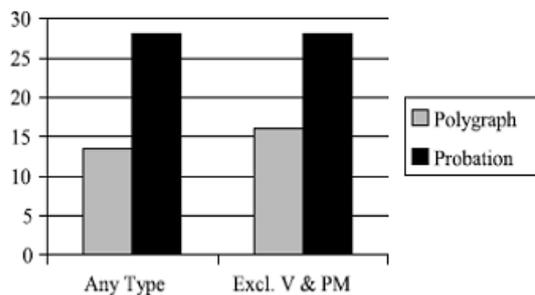


그림 2 거짓말탐지검사 시 초범 연령에 대한 보고

9) 그림 1과 그림 2는 Wilcox & Sosnowski (2005)에서 인용함.

에 의한 성범죄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고 연령에 의한 분류로 나누어 보았을 때는 성인 성범죄자와 청소년 성범죄자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심리학적인 기준에 의해 성범죄를 분류해보면(고선영, 양종희, 이수정, 2004)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는 분노형 성범죄자로 이러한 범죄자는 자신이 특별히 분노를 느끼는 여성이 있으며 그 여성에 대해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자는 자신보다 약한 여성에게 그 공격성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대를 했던 어머니, 자신을 버린 애인 등에 대해 분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여성에 대한 분노의 표현으로써 희생자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권력형 성범죄자로 이들은 성적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 이들은 자신의 열등감, 외소감 등을 여성을 강간함으로써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나이 어린 여성이나 만만한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Groth, Burgess, & Holmstorm, 1977). 또한 이들은 신사적인 매너로 여성을 유혹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데 여성이 반항하게 되면 도망가기도 한다. 이들은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사회성을 발휘하며 살아간다고 한다. 세 번째는 가학형 성범죄자로 이들은 분노와 권력을 성적으로 변형시켜 가학적인 공격행위으로써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행위로 인해 고통 받는 모습, 무기력해하는 모습 등을 보며 만족감을 얻는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매우 가학적인 행위 즉, 목조르기, 때리기 등의 행위를 한다고 한다(Amir, 1971). 마지막으로는 기회주의적 성범죄자로 처음부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강도나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였으나 충동적으로 성적인 욕구가 생겨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이다(Burgess & Holmstorm, 1974).

성적 일탈행동 유형에 따른 분류의 첫 번째 유형으로는 아동치한범 즉, 소아기호증 성범죄자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어린아이를 상대로 성적인 행위를 하는 범죄자들로 보통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어 오지 못한 열등감을 자신이 통제하기 쉬운 어린아이들을 통해 표현한다. 이들은 보통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보다는 아이들을 통제한다는 기분에서 자존감을 느끼고자 한다. 이

들의 이러한 행위는 보통 만성적인 경우가 많으며 주로 자신의 주거지 근방에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잘 거절하지 못하고 성적인 행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아이들의 특성을 이용해 제한된 아이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성도착증 범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비정상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한다. 예를 들면, 관음증, 노출증, 물품음란증, 복장도착증 등이 성도착증 범죄자의 행위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범죄행위들은 이미 사회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고 이러한 성범죄자들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상습적인 성범죄자들이 이와 같은 성도착증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윤가현, 2006). 마지막 유형으로는 성적 살인을 하는 범죄자로 이들은 달리 연쇄살인범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외국에서 보여져 왔던 연쇄살인들과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연쇄살인에서도 나타났듯이 연쇄살인의 특징 중 두드러진 것이 바로 성적인 일탈행위가 살인행위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성범죄자들 중 가장 위험성이 높은 자들로 이들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를 괴롭히고 살인하는 것이다. 이들은 매우 파괴적인(sadistic) 면을 지니며 성행위는 그 목적에 이르는 과정 중 하나일 뿐인 것이다(Dietz, Hazelwood, & Warren, 1990). 이들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매우 평범하거나 조용하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 지목되지 않는 경향이 높다고 한다. 이처럼 성범죄의 유형은 법률에 의한 유형과 연령에 의한 유형, 심리적 원인에 의한 유형, 성적 일탈행동에 의한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성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위험집단의 분류

성범죄의 재범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한 연구들과 현재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재범예측 혹은 위험성평가 도구들¹⁰⁾에서 나타난 재범 예측 요인들을 보면 범죄자의 연령, 동종전과 횡수,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성, 혼인관계, 조발비행, 비성적인 폭력 전과 횡수, 성격적 문제(심리검사 등에서의 병리적인 문제의 발현), 직업유무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Hanson 1997; Winick & Lafond, 2003; Quinsey, V. L., Rice, M. E., Harris, G. T., &

10) PCL-R, VRAG & SORAG, Static-99, MnSOST 등.

표 8. 성범죄 재범의 예측인자¹¹⁾

위험요소	r
성적 일탈	
아동에 대한 PPG(Penile Plethysmograph) 성적 흥미	.32
성적 일탈에 대한 선호	.22
이전의 성범죄 경력	.19
일부 낮은 피해자	.15
저연령에서의 시작	.12
무관계 피해자	.11
소년 피해자	.11
다양한 성범죄 경력	.10
범죄 경력/생활양식	
반사회적 성격	.14
이전 범죄	.13
인구통계학적 요인	
연령	.13
미혼	.11
치료 전력	
치료 중도탈락	.17

주 : r은 Hanson & Bussiere(1998)에서 산출된 평균상관계수
 자료 : Hanson, 1997; Winick & La Fond, 2003.

Cormier, C. A., 1998, Harris, A., Phenix, A., Hanson, R, K., & Thornton, D., 2003; Hare, 1991). 이와 같은 재범위험성 도구들은 외국의 경우 판결전조사과정과 가석방 심사단계 등에서 주로 활용된다(Hanson, 1997; Winick & La Fond, 2003).

표 8에 제시된 성범죄 재범위험요인들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매우 잘 예측해주는 요인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외국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측해내기 위한 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위험성 평가도구들은 성범죄자들의 심리적 혹은 성적 일탈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밝혀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만일 성범죄자들에 대한 처분 내용이 다양한 법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면 각 법령에 적합한 성범죄자들의 위험성 정도와 유형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구금 중심의 형사처벌 이외에 치료감호를 병과하

려고 한다면 대체 누구에게 치료감호를 적용해야 할지 또한 사회 내 전자감시의 대상자군은 누가 되어야 할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성범죄 누범자들은 위험성의 기준으로 보자면 고위험군에 속한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법률상의 죄명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장애인 의제강간, 친족강간, 강간으로 인한 살인·상해,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등과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법 등의 성범죄로 사실상 다양할 수 있으며 또한 심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권력형, 가학형 성범죄자들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성적일탈 여부로는 소아기호증, 성도착증, 피학증 등이 있을 수 있다. 성범죄자들의 특징을 분류해내는 데에 있어 법률상의 기준은 사실상 크게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왜냐하면 죄명만으로 보면 추행이더라도 피해자가 만일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더 높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아기호증 등의 성적 일탈을 동반하는 경우 그 위험성은 더더욱 가중될 것이다.

앞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재범위험성이 극히 높은 집단으로서 성적 사이코패스도 있다. 성적 사이코패스는 잔혹하고 무책임하며 정서를 느끼지 못한다. 그와 같은 성격 특성들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데에 있어서 책임감과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 잔혹함은 상상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적 사이코패스는 성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더욱 잔혹하고 가학적인 행위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들을 구별해 내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Hare, 1991).

반면 저위험군에 속하는 성범죄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위험군은 법률에 의한 분류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간음, 혼인 빙자 간음,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욕만족목적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영리목적 촬영물 유포, 성매매 알선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기회주의적 성범죄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성도착적 요소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죄질로 보자면 성범죄 저위험군에 속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만성적인 성범죄의 경우 성적 일탈적 요소가 있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일탈적 요소가 있지 않더라도 죄질이 악성적이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이코패스 등도 있는 것이다. 인터넷 등을 이용해 청소년을 성매매에 이용하는 성범죄자의 경우,

11) 이수정, 김경옥(2005)에서 재인용.

정신건강 기준으로 일탈적 요소를 가정할 수는 없지만 그 죄질은 매우 나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정신건강 기준이나 현행 법률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위험성을 분류해내기 쉽지 않다. 성범죄자의 위험성에 대한 이 같은 하위유형을 염두에 두어야만 성범죄자들에 대한 여러 처분들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범죄자의 위험성 특성과 처분의 적용

사실상 현재 논의되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분은 모두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들인데 이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험성이 높지 않은 성범죄자들에게도 그들에 맞는 처우가 적용되어야 함은 당연할 것이다.

저위험군에 속하는 성범죄자의 유형에는 청소년 성범죄자, 지하철 성추행범 혹은 기회주의적 성범죄자 등이 해당될 수 있다. 기회주의적 성범죄에는 데이트 강간이나 일시적인 성욕을 참지 못해 저지른 우발적인 성범죄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들 중 특히 전과가 없는 초범자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은 오히려 범죄의 학습화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들은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으며 직장에 다니는 일반 남성들이나 청소년 성범죄자들일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사회적 관계망을 그대로 유지한 채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보다 사회 내 처우와 같은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비용절감의 효과와 범죄의 학습화를 예방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 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기본은 보호관찰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등을 함께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도 수강명령을 통해 일부 성범죄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들을 위한 치료로는 인지행동치료에 바탕을 둔 부부치료나 가족치료와 개별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윤가현, 2006).

2003년부터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는 신상공개대상자 중 저위험군들에 대해서는 재범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신상공개를 면하여 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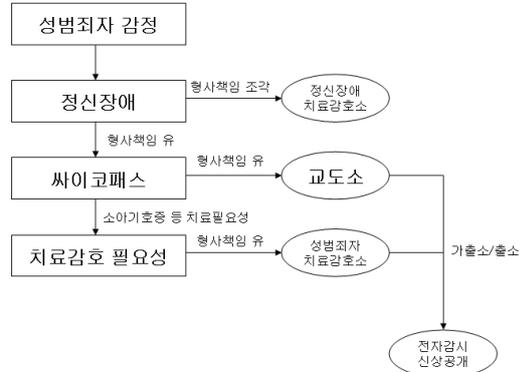


그림 3. 성범죄자 하위유형과 그에 따른 법적 처분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입증된 바 있다(한국 청소년상담원, 2007). 청소년 성범죄자들을 위한 인지행동치료프로그램의 구성에는 성적 각성 조절,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분노와 충동 조절, 책임감 강화,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 향상, 자존감 향상 등이 포함된다.

재범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에 대하여서는 일단 성적 일탈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앞으로 치료감호법이 개정되어 성범죄자들에게도 치료감호가 실시되면 치료대상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울증이나 정신분열증이 현재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있는 성범죄자들에게서 많이 발견되는 1축 정신장애들이라고 한다(법무부 보호국, 2006). 따라서 이에 대한 진단이 앞으로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심리특성 중 하나는 사이코패스에 대한 평가이다. 주변 환경을 악용하며 기만경향이 강한 사이코패스들은 치료대상자로 보기는 어렵다(Hare, 1991; Looman et al., 2005). 이들은 치료환경을 왜곡하고 치료자에게나 환자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 자들에게는 치료감호의 실시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대신 이들은 가장 위험한 부류의 성범죄자군이기 때문에 일단의 구금기간을 더 길게 부과해야 할 것이며 사회 내에 복귀하더라도 전자감시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소아기호증 등을 가진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병과주의 형태로 일련의 구금처분 이후 일정기간 치료감호를 적용할 수 있다. 현재는 치료감호처분이 감형의 형태로

적용되나 치료감호법이 개정된다면 구금기간 이후 보호 처분의 형태로 집행될 수 있다. 이때 집중적으로 치료를 시도하여 개선이 된다면 사회로 복귀시키는 방안을 예상할 수 있겠다. 그림 3에는 이 같은 성범죄자에 대한 다양한 처분이 어떤 분류절차를 통해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정적인 도표가 제시되어 있다.

제한점 및 장래 연구의 과제

앞서 성범죄자의 유형을 나누어 보았다. 첫 번째는 법률적인 유형으로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특수강간, 친족강간, 공공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욕만족목적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영리목적 촬영물 유통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심리학 이론에 근거하여 그 동기에 따라 권력형, 가학형, 기회주의형, 분노형 등으로도 나누어 보았으며 연령에 의해서도 분류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성적일탈행동의 유형에 따라서도 나누어 보았다. 소아기호증 혹은 아동치한범, 성도착증, 피악적인 성적 살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연령에 따라 성인과 청소년 성범죄자로도 나누어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하위유형을 분류하는 위험성 평가도구는 개발된 적이 없다. 연구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소아기호증이나 사이코패스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물론 성범죄자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소수의 범죄자가 거의 모든 성범죄를 저지른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에 대한 객관적인 분류체계는 당연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데, 성범죄는 성욕이라는 한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단순한 범죄라기보다 다양하고 역동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분류체계에 의한 평가에 의해야만 그들에 대한 처우가 적절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성범죄자를 다른 범죄자들과 한 곳에 모아놓고 있으며 그들에 대해 특별한 교육 혹은 치료 처우 등을 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치료를 요하는 성범죄자들에 대해 치료감호처분을 내리기도 하지만

이들은 극소수의 정신장애인에 불과하다. 이미 치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소아기호증 성범죄자들은 전체 교도소 수감 성범죄자 4,041명 중 670명으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이다(법무부 보호국, 2006). 이들이 어떠한 처우도 받지 못한 채 다시 사회에 나와 거리를 활보하고 아무 제재 없이 다시 같은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은 연일 보도되는 뉴스나 기사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다양한 형사처분과 치료를 목적으로 한 처분 등을 살펴보고 성범죄자들의 하위유형에 따라 이와 같은 법률적 처분들이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지 논의하여 보았다. 위와 같은 분류는 사실 법률, 심리학적 동기, 성적일탈행동, 연령 등에 의하여 분류한 성범죄자의 유형이고 그 외에 좀 더 다양하고 세부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여 분류하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성범죄자의 유형을 분류하고 재범예측 및 위험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 더욱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고 여러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하고 분석해보아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성범죄자의 유형 분류와 재범예측 및 위험성 평가를 보다 먼저 실시해온 외국의 재범예측 및 위험성 평가도구의 적용기준, 방법, 구체적 적용사례와 한계점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그러한 도구들을 국내의 실정에 맞게 어떻게 개량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방안들도 추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유형을 좀 더 세분화, 다양화하고 그에 맞추어 재범예측 및 위험성 평가 등을 구체적이고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범죄자들을 면담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등의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도 더불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성범죄자들에게 보다 적절한 처우가 될 수 있도록 성범죄자의 유형에 따른 처우 방안에 대해서도 역시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범죄자들의 일반적인 잠재적 위험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양분하여 정책적 논의사항을 나열해보았다. 이러한 분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지나치게 이분법적인 논쟁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듯이 성범죄자들의 개별적인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처분을 적용하는 것은 힘들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여러 가지 특별한 처분들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의 시행에 앞서 성범죄자들에 대한 위험성 평가와 분류체제의 구축은 꼭 달성되어야만 하는 불가피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그러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성범죄자 관리체제의 전문성 확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위험성 평가 도구의 개발 뿐 아니라 전문 인력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이며 효과적인 치료체계를 위해서는 더욱이 전문성의 확보는 필요불가결하다.

성범죄에 관한 관리와 감독, 재범예측과 예방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가장 어려운 형사 정책적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성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책은 형사정책의 가장 뜨거운 감자이며 보다 진보적인 관리체제의 구축은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과제로써 이 시대에 꼭 달성해야 하는 목표이다.

참 고 문 헌

고선영, 양종희, 이수정 (2004). “성폭력 범죄의 원인과 개입전략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10(특집호), 117-146.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http : //www.youth.go.kr](http://www.youth.go.kr)

경찰청 (2004). 경찰백서.

법무부 보호국 (2007). “미국의 성폭력 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실태연구”.

법무부 보호국 (2006). 정책위원회 3차 회의 자료. 미출판 자료.

법무부 (2006). 보호관찰통계연보.

법무부 홈페이지. [http : //www.moi.go.kr](http://www.moi.go.kr)

신준섭, 이영분 (2004).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효과성 분석”. 한국아동복지학, 18호, 35-61.

윤가현 (2006). “성범죄의 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엄, 11-22.

여의도연구소 (2005).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방안 자료집.

이수정 (2006). 최신범죄심리학. 북카페.

이수정 (2006). 고위험 성범죄로부터 사회보호를 위한

대안 모색. 한국심리학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 공동주최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52-66.

이수정, 김경옥 (2005). “성범죄 재범율에 관한 바른 이해와 재범 방지 대안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3(19), 83-99.

한국일보. 2006년 6월 22일자 기사.

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청소년성범죄자 인지행동치료 전문가 양성교육 자료집”.

SBS 2006년 6월 19일자 8시 뉴스자료.

YTN 2006년 6월 19일자 뉴스자료.

Abrams, S., & Ogard, E. (1986). Polygraph surveillance of probationers. *Polygraph*, 15, 174-182.

Ahlmeyer, S., Heil, M., Mckee, B., & English, K. (2000). The impact of polygraph on admissions of victims and offence in adult sexual offenders. *Sexual Abuse: A Journal of Research and Treatment*, 12(2), 123-138.

Amir, M. (1971). *Patterns in Focible Rap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urgess, A., & Holmstrom, L. (1974). *Rape: Victim of crisis*. Maryland: Bowie, Md. : R.J. Brady Co.

Wilcox, D. R., & Sosnowski, D. E. (2005). Poly-graph examination of British sexual offenders: A pilot study on sexual history disclosure testing. *Journal of Aggression*, 11(1), 3-25.

Dietz, P. E., Hazelwood, M. S., & Warren, D. S. W. (1990). The sexually sadistic criminal and his offences. *Bulletin of American Academy of psychiatry and the Law*, 16, 163-178.

Groth, A. N., Burgess, A. W., & Holmstrom. L. (1977). Rape, power, anger and sexualit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4, 1239-1248.

Hanson, R. K. (1997). *The Development of a Brief actuarial Risk Scale for Sexual Offense Recidivism* (Document No.1997-04). Ottawa, Ontario, Canada; Solicitor General Canada.

Hare, R. D. (1991). *The Hare Psychopathy Checklist-Revised*. Toronto, Ontario, Canada: Multi-Health

- System.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7-16.
- Harris, A., Phenix, A., Hanson, R, K., & Thornton. D. (2003). *Static-99 Coding Rules*. Ottawa, Department of the Solicitor General of Canada.
- Kendall, W., & Cheung, M. (2004). Theoretical reviews and policy issues: Sexually violent predator and civil commitment laws. *Journal of Child Sexual Abuse*, 13(2), 41-57.
- Lafond, J. Q. (2004). *Preventing Sexual Violence: How Society should cope with sex offender*.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ooman, J., Abracen, J., Serin, R., & Marquis, P. (2005). Psychopathy, Treatment Change, and Recidivism in High-Risk, High-Need Sexual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 549-568.
- Pfaffenroth, P. C. (2003). The Need for Coherence: State Civil Commitment of Sex Offender in the Wake of *Kansas v. Crane*. *Stanford Law Review*, 55, 2229-2266.
- Quinsey, V. L., Rice, M. E., & Harris, G. T., Cormier. C. A. (1998). *Violent Offenders Appraising And Managing Risk*.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he State of Texas (2006). *Rules and regulations relating to council on sex offender treatment*.
- Wilcox, D. T., & Sosnowski, D. E. (2000). Polygraph examination of British sexual offenders: A pilot study on sexual history disclosure testing.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11), 3-25.
- Wilcox, D. T., Sosnowski, D. E., & Middleton, D. (2000). Polygraph and the community management of sex offenders. *Forensic Updat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61, 20-25.
- Winick, B. J., & La Fond, J. Q. (2003). *Protecting Society From Sexually Dangerous Offender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xploration of Legal Dispositions for Risk Types of Sex Offenders

Soo Jung Lee Joo Hee Jeon
Kyonggi University

The pattern of sex offences is getting more serious today in S. Korea.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sex offences, there are many types of sex offenders. So when legal dispositions is applied, subtypes of sex offenders need to be regarded as important matter. But legal dispositions discussed nowadays have not considered importantly the subtypes of sex offenders. This study was attempted to classify subtypes of sex offenders based on legal, psychological and psychiatric classifications. Understanding of subtypes of sex offenders will help Ministry of Justice applying various legal dispositions properly to sex offenders. Currently Ministry of Justice applies incarceration and probation to sex offenders as most usual form of dispositions. However, electronic monitoring and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ization for sex offenders will be applied additionally since the traditional dispositions were not strong enough. If legal dispositions for sex offenders became various, individualized dispositions could be applied for sex offenders with consideration of their risk types. This study therefore explored applicability of dynamic system for various legal dispositions with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sex offenders.

Keywords: Types of Sex offenders; High risk group; Low risk group; Legal dispositions

원고접수 : 2007년 7월 2일
심사통과 : 2007년 8월 16일